

부산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334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12.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12.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135,4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135,4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2021. 12. 4. 사망)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와 망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는 E, F, C, G이 있다.

나. H 주식회사는 2015. 12. 11.경 C과 대여금 30,6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7.9%,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신차구입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016. 6. 10.경 대여금 54,000,000원, 상환기간 48개월, 약정이율 연 11.9%,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하여 중고차상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H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전전 양수하고, 2019. 10. 15.경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21. 기준으로, C에게 이 사건 제1대출에 따라 31,211,766원의 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제2대출에 따라 69,923,637원의 원리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마. 망 D의 사망 후에, 피고는 2022. 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C이 2021.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할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피고와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C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12.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우승

별지 목록

(1종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위 기와지붕 25층 공동주택

1층 913.92㎡ 2층 913.92㎡

3층 913.92㎡ 4층 913.92㎡

5층 913.92㎡ 6층 913.92㎡

7층 913.92㎡ 8층 913.92㎡

9층 913.92㎡ 10층 913.92㎡

11층 913.92㎡ 12층 913.92㎡

13층 913.92㎡ 14층 913.92㎡

15층 913.92㎡ 16층 913.92㎡

17층 913.92㎡ 18층 913.92㎡

19층 913.92㎡ 20층 913.92㎡

21층 829.08㎡ 22층 829.08㎡

23층 631.23㎡ 24층 631.23㎡

25층 631.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1179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7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179210분의 2322. 끝.

